

景, 景衣에 관한 연구(2)

임명미

동덕 여자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Wedding Veil (Kyung)(2)

Myung-Mi Im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2. 6. 4 토)

ABSTRACT

Kyung(景, 景衣), Which is Wedding ceremonial head dress, Veil.

Ancient China, When dynasty is changing, wedding head dress form is different.

Old china, Kyung(景) was sleeves attached dress form. But, after Dang(唐) and Song(宋) Dynasty changed square formed clothes, which is put on from head to the shoulder, and another is sleeves attached dress form.

Ancient Korea have been face covered clothes. Myunuei(面衣). from Buyo(夫餘) to the south Silla(南國新羅) Dynasty. Koryo(高麗) dynasty, likeness of the Song Dynasty square formed head wear, Mongsu(蒙首), and Kedu(蓋頭). When Chosun(朝鮮) Dynasty, Kyunguei(景衣), which was square formed 12 chuk size head wear of the blue colored veil. When King and Queen finished wedding ceremony in the another palace, Queen following the King, go to the palace, who put on the wedding veil, Kyungui(景衣), in the papanquin. and take out of the veil by another mother, befor the hapkun(合奩)ceremony.

also Chosun dynasty has been another Queen's wedding ceremonial veil 'myunui(面衣)', It has been put on the head dress with ceremonial dress Juckui(翟衣). And, take out of the veil by another mother, befor the hapkun(合奩)ceremony.also, common people has been put on the head dress with ceremonial dress Youmui(紳衣). And, take out of the veil by another mother, befor the hapkun(合奩)ceremony.also, common people has been put on the Mongsuui(蒙首衣,長衣), head dress with ceremonial dress round neck dress(圓衫). And, take out of the veil by another mother, befor the hapkun(合奩)ceremony.

Key words : Kyung(景, 景衣), Wedding Veil, Myunuei(面衣), Mongsui(蒙首衣), Kedu(蓋頭), Jangui(長衣), Bak(박).

I. 서 론

1. 연구목적

조선시대 <國婚定例>나 <尚房定例>, <嘉禮都監儀軌>등의 儀禮書나 土庶用 <四禮便覽>등에 보면, 王室妃嬪과 公.翁主의 嘉禮服 및 土庶婚의 服具속에 (1) “面紗布”, (2)“帕”, (3) “蒙首衣 : 蒙頭衣 : 長衣”(4) “布帽”=“너울”와 “笠帽”, “너울드림(부착) 笠帽(羅火笠)”와 袖面紗布 가 있다. 이들 嘉婚禮用 服具들이 嘉婚禮에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게 着脫 되어지며, 그 制度가 어떤 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紛明, 복식문화재의 復元作業에 미미 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嘉婚禮用 儀禮書에 보이는 “景衣”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朝鮮時代의 경우, 王室嘉禮나 土庶婚禮用 “景衣”외에 “景衣”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服具로, (1) “面紗布”, (2)“帕”, (3) “蒙首衣 : 蒙頭衣 : 長衣”(4) “布帽”=“너울”와 “笠帽”, “너울드림(부착) 笠帽(羅火笠)”와 袖面紗布 가 있다. “景”. “景衣”代用物인 이들 혼례용 복구에 대하여, 이들 服具가 조선시대 嘉婚禮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그제도가 어떤 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史料, 諸學의 見解나 관련 연구서, 繪圖, 전세 실물 등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國婚嘉禮 및 土庶婚禮用 “面紗布”·“面幕”·“面衣”

중국의 儀禮書에 보이는 先秦시대의 “景”은, 中期이후 朝鮮에서 仁祖代 이후의 <嘉禮都監儀軌>, 英祖代 간행된, <國婚定例>와 <尚房定例>에서, 藍廣紗 12尺으로 만드는 “景衣”로 명칭이 바뀌어

王室嘉禮法服속에 포함되고, 國末까지 계속 된다.

뿐만 아니라 仁祖代 이후의 <嘉禮都監儀軌>, 英祖代 간행된, <國婚定例>와 <尚房定例>에는, 王실비빈용 쓰개류로 “景衣”외에, 妃嬪의 嘉禮時法服과 같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1,2)} “흘面紗布”와 衣櫛에 속하여 露衣와 같이 착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너울드림 笠帽와 袖面紗布”가 포함되어, 이후 국속을 이루게 된다.

朝鮮의 <嘉禮都監儀軌>에 포함된, 藍廣紗 12尺으로 만드는 “景衣”는, <景, 景衣에 관한 선행 연구(1)>에서 본바와 같이, 王妃가 本宅이나 別宮에서 親迎儀를 마치고, 同牢宴을 치르기 위하여 王을 따라 대궐로 향하는 길에, 蓮을 탈 때, 유모가 씌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벗는 시기는, 土庶의 경우, 중국측 <儀禮 . 土婚禮>에서는,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여 祠堂에 告할 때, 유모가 이를 벗겨 주거나³⁾, 또, “..新婦의 蓋頭蒙巾은 車子를 타기 전에 덮어 쓰는데 車子 안에서도 쓰고 앉아 있었으며⁴⁾, 新婦의 집에 도착하여 婚禮舉行時, 新郎이 손으로 걸어 준다”⁵⁾. 또한, “...花轎가 도착하면, 신부는 먼저 부모에게 이별의 인사를 드린다. 그런 연후에 紅巾蒙首를 쓴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여 婚禮舉行時 신랑이 손으로 “蓋頭”를 벗겨준다. 이로서 두사람이 정식으로 相見하는 것이다⁶⁾. 또, 朱軾의 儀禮舒略에 보면, “..婿婦交拜後舉蒙頭..”라 되어 있고, 註解에 “蒙頭는 얼굴을 가리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蓋頭”이다. 혼례를 거행하려 신랑집으로 떠나기전 부모에게 인사 드린후 머리에 덮어졌다. 乘車 후 夫의 집에 도착하여 交拜禮後 保姆가 이를 제거하여 준후에 合轎禮를 거행하였다.”⁷⁾ 그리고 宋代, 朱熹는 신부의 蒼頭는, 당연히 신랑이 제거해 주어야 한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인사를 하고, 신랑이 答拜한 후에 손으로 蒼頭를 제거한다.⁸⁾

즉, 이상에서 본대로 몇가지의 事例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土庶의 전통혼례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식으로 蒼頭벗김은, 交拜禮後 신랑이 손수 蒼頭를 걷어주는 양식이다.⁹⁾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측 <儀禮 . 土婚禮>에서, “景”이나 景의 변형물인 “面紗布”를 벗는 시기는,

첫째,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여 祠堂에 告할때, 유모가 이를 벗겨 주거나, 둘째, 新婦의 집에 도착하여 交拜禮 舉行時, 新郎이 손으로 걷어 주거나, 셋째, 交拜禮後 保姆가 이를 제거하여 준후에 合巹禮를 거행하는 것의 3가지 사례가 고찰되었다.

그러나 王비는 土庶의 경우와 달리, 대궐에 도착하여 祠堂에 告하는 儀禮절차가 없으니, 王비가 대궐로 들어오면서 쓰고 앉은 “景衣”는 언제 어떻게 누가 벗겨주는 것인지?, 王비(빈)의 경우, 清代 魏松이 쓴, <壹是紀始>, 권 5에서 보면, 儀禮註疏를 근거하여 말하기를 ‘..隋書...后妃之禮..頭身加帽..至將拜...姆去幘..’이라 하여 황후의 경우, 交拜禮시까지 착용하고 있다가 交拜禮후 유모나 상궁이 황제를 대신하여 이를 제거하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⁰⁾ 이로 보면, 王비(빈)의 경우, “景衣”는 交拜禮時에 王을 대신하여 유모나 상궁이 벗겨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중기 이후 조선의 禮制에는 “景衣” 외에, “面紗布”的 制度가 새로이 첨가되어 제도를 이루게 된다. 이 면사포 제도는 “景衣”와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르며, 언제 어떻게 착용하고, 그 源源과 脫着시기에 관하여 고찰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

1. 조선중기 이후의 嘉婚禮時 “面紗布”的 制度, 源源과 脱着시기.

1) “面紗(布)”의 源源과 제도 :

우리나라 嘉婚禮用 “面紗(布)”의 源源은, 上古 시대 우리나라 夫餘에 있었던 “面衣” 제도가 그 始作으로 歲歲年年이 傳承되어진 제도의 일종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論考에서는, 中國측 先秦의 <儀禮·土婚禮>에 보이는 “景”的 제도가 宋代에 변질되고, 새로이 創製된 “面幕” 제도에 그 연원이 있으며, 宋의 <朱子家禮>를 포함한 제반 禮制書의 禮制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新舊制度의 혼합으로 創製된 “面幕” 제도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조선중기 嘉婚禮時 妃嬪의 法服에 포함된 面紗布

는 紫的羅나 紗로 만든 “홑 面紗布”인데, ‘景, 景衣’에 관한 연구⁽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宋代, 先秦의 “景”的 제도가 탈것의 제도변형 등에 수반하여, 宋에서는 婚禮用 “景”은 紅色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宋式 명칭은 “蓋頭, 面幕, 花幕”이었다. 宋代에 婚禮用 ‘景이’ 正方形 大幅巾 ‘面幕=面紗(布)’ 제도로 변질되고 정형화 되면서 “面紗(布)”로命名된 “景”이, 중기이후 조선의 禮制新定時, 종래의 禮制書에 포함된 “景”과 함께, 二重으로 流入되어, 王실<嘉禮都監儀軌>속에서 法服과 같이 착용하는 “面紗布”가 되고, <儀禮·土婚禮>상의 “景”과 병존하여, 國末까지 제도를 이룬다. 王비의 面紗布를 만드는데는 紫的羅 8척 4촌5분을 사용하여 홑으로 만들고, 침금, 1속 5첩, 니금 3전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雲鳳紋을 金箔한다.

그러나 전기와 중기의 嘉禮都監儀軌에는 王世子嬪의 경우, 法服과 같이 착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홑 면사포”的 제도가 없고, 후기에 이르러, 문조 신정후(1819), 순종 순명후(1882), 세자빈의 경우에만, “면사포”的 제도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첫째, 王비의 경우, 인조 장렬후(1638), 숙종 인현후(1681)의 경우에는 面紗布의 제도가 儀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숙종 인원후(1702)부터, 즉 18세기 초의 嘉禮에서부터 그 착용사례를 문헌 기록상으로 볼수 있는데, 만일 國俗으로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례상으로 제정된 제도라면, 인조 장렬후나, 숙종 인현후의 경우에도 반드시 삽입되어 있어야 할것이며, 같은 시기의 세자빈의 경우에도 禮制는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상으로는 같은 시기의 세자빈의 경우, 王비와 달리 면사포 제도가 아예 法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점에 대하여 생각 해보아야 할점은, 만일 儀禮상으로 法服에 面紗布의 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禮制였다면, 기록상의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세기를 지나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문조(1819) 세자빈 신정후 嘉禮時에 착용하는 면사포가 등장하는 것은, 후기에 이르러서 중기이후 王실<嘉禮都監儀軌>를 詳考하면서 세자빈의 경우에도 王비의 경우와 같이 儀禮에, 面紗布 제도를 첨가

한 것이 아니었을가 생각된다. 세자빈의 경우, 면사포는 걸감, 자라 10척, 안감, 자광사 10척으로 겹으로 만들고, 자색 초, 2척 2촌으로 만든, 월마기가 달려 있다. 순종 세자빈 순명후의 경우, 단지 紫的羅 9尺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기록 되어있어, “홑면사포”를 왕실비빈이 가례시 法服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의례에 필수적인 제도인것으로 단정적으로 이해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面紗布’ 제도가 嘉禮시의 法服에 제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면, <儀禮.土婚禮>에 “景”的 착용시기가 行禮順序에 명시 된것과 같이 응당 妃嬪의 行禮순서에 면사포 着脫事例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례순서에 면사포 着脫事禮가 명시되지 않은 것 이라든가, 세자빈의 경우, 면사포 제도가 아예 法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보면, 왕비의 法服에 포함된 “홑面紗布”의 제도는 “景衣”的 制度가 변질되어 創製 된, 宋의 禮制를 유입하여 新定時, 제도의 중복유입과 혼용이 초래한 重複기록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料 되는것이다.

즉, 조선의 중기이후, 宋의 禮制 收容 당시, 宋代에 變質되어, 형성된 “面紗布”제도와 중국측 <儀禮.土婚禮>에 포함된, “景衣”제도 兩者를 모두 수용하여 禮制를 新定하게 되면서 嘉禮시 法服용으로 “景衣”와 “홑面紗布” 2種이 유입되어, 제도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으로 숙종인원후 이후 면사포는 紫羅, 紫的廣紗 등이 사용되는데, 服色은 紫(왕비), 藍(왕세자빈), 祿(공.옹주, 평서민)¹¹⁾으로 된, 羅. 紗직물이 쓰였고, 신분에 따라서 雲鳳, 鴛鴦, 鶴, 吉相語紋 등을 金, 銀尼로 文飾하여 사용하였다.¹²⁾ 傳世實物上으로 王妃가 사용한 것으로 推定하는, 이화여대 소장, 黑紫色 甲紗, 홑으로 만든 面紗布는, 2폭을 이어서, 가로 150cm * 세로 216cm의 直四角形으로, 여기에 金箔으로 花려하게 紋樣을 나타낸 것이다.¹³⁾ <도1>

平庶民의 경우, 公翁主用의 婚禮服을 婚禮當日 하루에 限하여 사용할수 있었으므로, 1900년대 記錄寫眞에서, 平庶民 婚禮에 緑圓衫을 입은 新婦가 面紗布를 쓴것을 볼수있다.¹⁴⁾

2) 法服 翟衣와 같이 착용하는 것으로 변질된,

“홑面紗布”的 제도와 착탈시기.

중기이후의 조선에서 法服의 제도에 포함되어 紫的羅나 紗로 만든 “홑面紗布”的 제도는, 宋代, 先秦의 “景”的 제도가 변질되어 새로 창제된 제도로, 宋에서는 婚禮用은 紅色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宋式 명칭은 “蓋頭, 面幕, 花幕”이었다.

婚禮用 正方形 大幅巾 제도로 변질되어 정형화된 “景”이, 중기이후 조선의 禮制 新定時 流入되어, 왕실<嘉禮都監儀軌>속에서 법복과 같이 착용하는 “홑面紗布”로 되고, <儀禮. 土婚禮>상의 “景”과 병존하여, 嘉禮時 法服과 같이 착용하는 “홑面紗布” 제도를 이루어 國末까지 이어진다. 즉, 조선의 중기이후 禮制 新定時 嘉禮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儀禮. 土婚禮>상의 쓰개인 ‘景衣’와, 宋代 변질된, ‘景衣’ 제도인 ‘面紗布’제도, 兩者가流入되어 兩者가 嘉禮法服에 相存하게 되면서, 왕실 비빈용으로 “紫的羅로 8척 4촌5분으로 만든 홑面紗布”제도 외에 藍廣紗 12척으로 만든 “景衣” 제도도 그대로 존속하여, 양자가 <嘉禮都監儀軌>에 포함되어 제도를 이루게 된것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兩者의 着脫時點과 順次상의 문제는, 兩者가 모두 嘉禮에 사용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중국측 전통흔례의 事例에 입각하여 추정한다면, 왕비의 자작라 ‘홑面紗布’는, 親迎 당일 翟衣를 갖추어 입고 首飾을 한 머리 위에 덮어 쓰고, 부모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親迎禮를 마친 王(세자)을 따라서 동뢰연을 치르기 위하여 대궐로 향하는 輦을 탈려고 할때, 상궁이나 유모가, 盛裝을 하고 面紗布를 쓴 위에, ‘景衣’를 덧덮어 씌워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벗는 시기는, 儀禮의 順次대로 라면, ‘景衣’는 대궐에 도착하여 輦에서 내린후 待期所에 도착한후 유모나 상궁이 이를 벗겨주고, 法服과 같이 首飾을 한 머리 위에 착용한 ‘面紗布’는 交拜禮 舉行時, 유모나 상궁이 왕을 대신하여 벗겨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王室嘉禮를 傳統 文化財의 일부로 復原거행시, “面紗布”나 “景衣”的 着脫과정을 儀禮 順次의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III. 土庶 婚禮用 景, 景衣, “帕”.

魏松은 “景”은 蒙首의 “帕(蓋頭)”과 같은 것이라 하였으며..25), 이를 보아서 “拍”이 “蒙首”와 같은 것이며, “景”的 변형물의 일종임을 알수있고, 또, 朱軾의 儀禮舒略에 보면, “..婿婦交拜後舉蒙頭..”라 되어 있고, 註解에 “蒙頭는 錦으로 만든 方帕이며, 橫으로 直四尺(120cm)크기이다. 신부가 혼례를 거행하러 신랑집으로 떠나기 前, 부모에게 인사 드린 후 “帕”을 머리에 덮어졌다. 乘車후 夫의 집에 도착하여 交拜禮後, 반드시 保姆가 이를 제거하여 준 후에 合昏禮를 거행하였다¹⁵⁾.

여기 보이는 “帕”은, 길이가 120cm가량 되는 錦으로 만든 머리덮개임을 알 수 있고, 夫의 집에서 交拜禮 거행후, 合昏禮 거행전에 보모가 이를 벗겨주는 것임을 알수가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景’의 제도는, 宋代 皇室이하 평서민의 婚俗에 定禮化 되어, 正方形 面紗布가 되고, “帕”은 <儀禮 . 土婚禮>에 보이는, “景”과 같은 제도이나, 송대 그명칭이 “帕”이 되었고, 이를 중기이후의 조선에서, 肅宗代 이재가 賛한 <四禮便覽>을 통해서 평서민의 婚禮에 流入되고, 그 명칭이 머리덮개인 “帕”으로 되어 제도를 이룬 것이다. 즉, 조선의 중기 土庶婚에서 혼례용 “帕”的 사용 예를 <增補 四禮便覽>¹⁶⁾에서 보면, 新婦가 부모의 訓戒의 禮를 마치고, 轎子를 타려고 하면, “....姆奉女 (集說), 有帕 蒙頭, 出中門,...登車, 下廉..” 즉, “...手母가 색시를 모시고 나가 가마에 오르기 전, 帕(보자기 : 集說)을 가지고 머리를 가려준다...”¹⁷⁾고 되어 있어, 土庶婚禮時 “景”的 명칭이 “帕”으로 되었음을 알수가 있다. 周代의 <儀禮 . 土婚禮>에 보이는 “景”이, 宋代에는 婚禮用 “蓋頭, 面幕, 花幕”이 되었고, 宋式 명칭은 “蓋頭, 面幕, 花幕”이었으나, <家禮集說>에서는 宋代의 婚禮用 “蓋頭, 面幕, 花幕”을 “帕”이라 命名 한것이다. <增補 四禮便覽>에서는 이를 그대로 따른것이다. 즉, 宋式 혼례복용 “景 : 蓋頭”는, 土庶婚 一名 “帕”이 되었고, 만드는 材料와 服色은 궁중용 紫. 紅. 藍, 緑 등의 色을 제외한, 土庶부녀자용 婚禮服인 “祔衣”的 服色과 동일하게 玄色의 紗,

羅직물로 “帕”을 만들어 머리에 덮어 쓰는 제도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중기의 土庶婚禮를 傳統 文化財의 일부로 復原거행시, 土庶부녀자용 婚禮服인 “祔衣”的 服色과 동일하게 玄色의 紗, 羅직물로 “帕”을 만들어 머리에 덮어 쓰고 벗기는 着脫과정을 儀禮 順次의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IV. 土庶 婚禮用 蒙首衣, 蒙頭里.

長衫, 長衣, 장옷.

“蒙頭衣 : 蒙首衣 ; 蒙頭里”는 唐代 소매달린 對襟 “外被”的 一種 이면서, 宋代의 對襟, 背子 유형의 옷으로, 남국신라이래 高麗시대 이미 常用되고 있었다.

즉, 고려시대에 外套 목적용으로 덧입었던 “露衣”인데, 内외용 쓰개류가 시대특성적 服俗을 이루면서 복식겸용 “쓰개”로 변질되어, 겹용되어오던 服具의 하나였다. 쓰개 겹용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名稱이 “머리를 덮는다”는 뜻의, “蒙頭衣 : 蒙首衣 ; 蒙頭里”라는 衣名을 지니고 있으며, “蒙頭衣 : 蒙頭里”는, 中國의 宋나라와 우리나라의 高麗시대, 日本의 幕府時代, 우리나라의 朝鮮에서 초기 이후 國末까지 착용되어진 겉옷의 일종이다. 防寒, 遮陽, 藏身隱蔽, 行道時 風塵으로 부터 身體保護 등의 목적용으로 착용하였다.<도11>

徐兢의 ‘高麗圖經’에 “蒙首”라고 하는, 머리부터 全身을 障蔽하는 목적의 方巾形 쓰개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 方巾形 덮개에 소매를 달아, 입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衣服으로 變形된것으로 생각되어지는 衣物이다.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 土庶婚禮에 사용되어진 “蒙頭里 : 蒙頭衣 : 蒙首衣”的 모양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가) 머리에 덮어쓰는 것이 着用目的에 包含되어 있었으므로, 左右 대칭으로, 옷의 均衡이 좌우로 균등하게 配分되게 된, 對襟이며, 朝鮮 初. 中期 까지는, 옷의 양옆이 겨드랑이 이하 부터 트임이 있었다. (나)머리에 덮어쓰기도 하면서, 同時に 防

寒用으로 입기도 하였으므로, 몸을 충분히 감쌀수 있도록 품이 크고 넓다.

(다) 外被(外套形)형 옷으로 긴소매가 달렸다.

이 “蒙頭衣：蒙首衣：蒙頭里”는 朝鮮初, 太宗代에는 防寒용으로 치마. 저고리 위에 입기도 하고, 머리서부터 덮어 써서 障蔽목적으로 착용하였다. 즉, “...太宗代, 庶人 婦女, 종, 비, 천예 등이 綿, 紬, 莢布로 만든 “蒙頭衣” “蒙頭里”를 입었다.”¹⁸⁾

세종 28년에 制定, 王妃喪制에 보면, 王妃喪時, 命婦의喪服으로 “蒙頭衣”를 착용한다고 되어있고, 註에 “喪服으로 착용하는 蒙頭衣는 宋式 背子로 對襟, 長袖, 양옆트임, 치마길이 長衫”이라고 되어있어¹⁹⁾, 위에서 본, “蒙頭里：蒙頭衣：蒙首衣”的 형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宋代 制定된 諸般 <喪禮書>類에 보이는, 궁중 부녀자용喪服의 경우, 당시 궁중 부녀자들의常服이던것을, 백색이나, 혹은 生布로 만들어 입었던 차이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송나라의背子와 같은 옷을 조선에서는 “蒙頭衣：蒙頭里”, “長衫” 등으로 부르고, 입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하였다. 朝鮮의 中後期, 肅宗代, 이재가 編纂한 <四禮便覽>의 婚禮부분에 보면, 新婦가 입는 盛服속에 “峉”가 있고, “峉”를 补衣 위에 입는다. “峉”的 註解에 보면, “.....섶을 여미지 않고, 소매는 없으며, 양옆이 트였고, 길이는 치마와 같고, 양옆과 단은 마무리 단처리 하며, 그 옷의 形制는, 蒙頭衣(蒙頭里)란 옷의 소매가 없는 것과 形制가 같고, 宋式 背(襱)子와 같은 옷...” 이라 되어있다.²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初.中期의 蒙頭衣(蒙頭里)의 모양, 宋나라 부녀자들의背子의 모양, 朝鮮中期 士庶婚禮服用 “峉”的 모양²¹⁾을 알수가 있다.

위에서 본 “峉”的基本形에,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겨드랑이 아래 옆트임을 막고, 3각무, 결무를 달고, 對襟形 긴 길이의 옷으로 변형 制作되면서, 옷의 앞중심 양측에 2개의 고름, 우측길의 중간에 고름 한개를 더 달아서, 두루마기처럼 防寒用으로 여며 입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하는 2가지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명칭은 “長衫：長衣=장옷”이 된다. 출토 실물상으로 “長衫：長衣=장옷”을, 宣祖 16년(1583년)사망, 東來鄭氏壽衣에서 보면, 그 모

양이 결섶과 안섶이 같고, 목판깃이며, 2重섶으로, 겹쳐지게 여미지 않고, 앞단을 나란히 세우면, 對襟이 되며,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두루막힌 對襟形長衫이 출토되어 이를 立證해주고 있다.²²⁾

1732년경 出土遺物中, “長衣”라고 이름 붙인 옷도, 두루막하고, 對襟形이며, 결섶과 안섶이 같고, 목판깃, 2중섶, 겨드랑이 아래 3角무, 결무가 있다. 袖口가 좁고(袖口:19-20) 긴, 직선소매이며, 소매 끝에 백색의 袖端을 부착했다. 오른쪽 길에, 옷고름이 옷의 중심에 하나, 길속에 하나, 모두 2개를 달아서, 두루마기처럼 防寒용으로 입거나 머리에 쓰거나 하는 2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²³⁾

朝鮮末期의 “장옷”을 前世實物로 보면, 對襟이며, 草綠色 紹이나 明紬로 만들고 안은 紫朱色을 쓰고, 袖口에 흰색 거들지를 달았으며, 깃은 좌우 같은 모양이다.

末期의 後期에 이르면, 이 “장옷”이 주로 머리에 쓰는 목적이 主가 되므로, 입는데 도움이 되는 옷 고름은 달리지 않게 되고, 동정대신 넓적한 백색천을 대서, 넓적한 백색천이 이마위 頂首里에 위치하도록 해서 입었다. 깃아래 양쪽에 二重 긴 고름²⁴⁾을 달아, 여미고, 또, 손으로 잡아서 여며 입었다. 멋을 부리는 경우, 겨드랑이에는 깃, 고름과 같은 색으로 三角形 무를 대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에서 본, 出土實物이나 전세 실물상의 “長衫=長衣=장옷”과 後期의 前世實物로, 그 名稱이 “蒙頭里”인, 巫俗人用 巫服 “蒙頭里”와 그 制度法이 똑같음을 알수가 있는데, 現在 傳世巫俗人用 “蒙頭里” 유물로는 宮中遺物²⁵⁾과 高麗大學校²⁶⁾와 圓光大學校²⁷⁾에 前世實物로 保存되어 있다²⁸⁾.

대개 巫俗은 保守性을 지니면서 그 傳統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들 前世實物, 巫俗人用 “蒙頭里”가, 國初 “蒙頭里”的 名稱과 形制를 그대로 固守하고 있을것이라는 것을前提할 때, 다음과 같은 等式이 成立됨을 알 수 있다.

즉, “高麗이래 朝鮮初期의 蒙頭衣=蒙頭里”=“宋式 背子=對襟, 長袖, 양옆트임, 치마길이 長衫”=“朝鮮初期 이후 부녀자용 두루마기형 防寒 및 内外目的用 쓰개형 對襟 長衫(長衣 : 장옷)”=“傳世 實物巫俗人 蒙頭里”가 동일한 類型임을 알수있고, 에도

시대 이후의 日本이나, 中期以後, 後期조선, 國末의 濟州道, 慶南地方 일원에서 婚禮儀式에서 “長衣”, 障蔽목적용 머리덮개 쓰개인 “蒙頭里”가 소매달린 外披形 “景”목적으로 사용되어온 이론적인 근거를 찾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濟州道와 慶南지역 일부에서는 舊韓末 以後, “長衣(장옷)”을 婚禮時 치마 . 저고리 위에 입기도 하고, 머리 丹粧이 끝나면, 面紗布 대신, 머리에 덮어쓰는 목적으로 착용 하기도 하였던 배경을 이해할수있게 한다.²⁹⁾

즉, 景.景衣에 관한 연구(1)에서 본바와 같이, 中國측 禮書類에 보이는 “明衣”형 “景”과 유사한 “被襖子”가 外被形 “景”으로 되어, 上庶의 婚禮時 착용되어 지다가, 東亞世亞 周邊諸國에 傳해지고, 일본에서는 藤原, 鎌倉시대에, 서민여자들이 외출시 “小袖”를 머리에 덮어쓰는 “被衣”가 된다. 朝鮮에서는 그 名稱이 “蒙頭衣 : 蒙頭里” 였다.³⁰⁾

V. 國婚嘉禮 및 士庶 婚禮 衣襪用 “布帽=너울”와 “笠帽”, “너울부착 笠帽(羅火笠)와 袖面紗布”.

1. “布帽=너울”와 “笠帽”, “너울부착 笠帽 (羅火笠)”.

조선초 禮制 制定 당시, 出行時 内외용 쓰개류인, “布帽”와 “笠帽”, “너울드리운 입모”와 “袂面紗布”착용의 제도가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葬禮時, 禮制는 宋式으로 거행하되, 妃嬪의 葬服에서, 宋의 禮書類에 보이는 葬服용 머리쓰개인, 宋式 “方巾形 蓋頭” (5尺(150cm) 方形, 大幅 方巾形) 대신<도3-1.2>, 國俗으로 高麗 아래로 우리나라에서 服俗을 이루고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布帽”와 羅火笠”으로 대체 된다³¹⁾ <도8-1.2> 출행시 (1) 布帽를 쓰고 그위에 입모를 덧쓰는 경우, <도5>

(2) 입모의 四面, 원형, 6각, 8각형의 주위에 너울드름을 붙여서 만든, 너울드름 입모 만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 <도7-1.2.3>(3) 입모의 前面에는 너

울드름을 달지 않고, 착용시 面紗布와 같이 쓰는 경우 등의 3개 유형이 공존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시의 時俗대로 妃嬪의 衣襪에는 法服과 같이 착용하는 “景衣”와 “面紗布” 2種의 服具와 禮服인 露衣와 같이 착용하는, “포모”와 “입모”, “너울드리운 입모”와 “袂面紗布”的 제도가 국속을 이루게 된것이다.

2. “布帽”=“너울”.

宋의 禮書類에 보면, 嘉.凶禮用 쓰개류인 ‘蓋頭(5尺 方形, 大幅 方巾形)’가 있다.

조선초 禮制祥定 당시, 禮制는 宋式으로 거행하되, 妃嬪의 葬服에서 머리쓰개는, 宋式 “方巾形 蓋頭” 대신, 高麗 아래로 우리나라에서 服俗을 이루고 있었던 “布帽”와 “羅火笠”으로 대체하도록 定한다³²⁾. 여기 보이는 “布帽”가 남자의 경우, 福巾유형의 巾帽에 해당하는 여자용 머리쓰개인 것으로, “布帽”는 “布帽”만을 단독으로 머리에 쓰기도 하였고<도3>, “布帽”를 쓴 위에 <도5>에 보는 것과 같이 笠帽을 쓰기도 하였다. ‘布帽’는 騎馬출행시 말의 運行速度에 의하여 布帽의 느러진 자락이 바람에 휘날려 너울거렸으므로, 一名 ‘너울’이라고 하였다. 이를 문자로 기록시 ‘羅火’나 ‘汝火’로 기록하는데, ‘비단 나’, ‘너 여’에 ‘불화’가 합해진 것으로 ‘나불’, ‘너불’이라는 음으로 읽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³³⁾ 또, 너울은 전반기 嘉禮都監儀軌에서는 “汝火”로 기록 되어 있고, “汝火”는 “너여”字에 “불화”字가 합쳐져서 “너불”이 되는데, “너불”이 차츰 “너울”로 변한 것으로 보고³⁴⁾, 문헌기록상의 “汝火”가 “너울”이 되는 것으로 定意하고 있다.

“汝火(너울)”은 겹으로 만든다. 재료는 인조대 이후 國末까지 王妃(嬪)의 衣襪에서 衣次 소요량이 같다.

가) 겹너울 : 겉감으로 紫的羅 8尺 5寸(255cm), 안감으로 紫的綃 6~8尺(180cm)가 소요된다. 겉감을 재단하여 만들되, 얼굴이 위치하는 앞부분(너비 23cm 가량)은 투시가 용이 하도록 안감을 부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감의 치수가 겉감에 비하여 1

척 5촌(45cm)가량 적게 소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너울纓子(끈) : 너울의 纓子(매는 끈)는 인조 장렬후 부터 숙종 인현, 인원후까지는 紫色羅 1尺 2寸(36cm)으로 만든 끈 외에, 大紅真絲 1錢, 자색 진사 5-7분을 들여서 만든 絲條帶 영자를 사용하였고, 숙종 인원후 부터 고종 명성후 까지는 紫色羅 1尺 2寸(36cm)으로 만든 끈만을 사용하여 맷다.

다) 너울裝飾매듭 : 大紅色 진사나 紵冒 1량 5전 을 가지고 매듭을 만들어서 뒷중심에 裝飾으로 느렸다.

라) 梢 : 梢(帽頂 장식용 繡실)은 홍색 鄉絲 3전을 사용하여 帽頂을 덮어 장식하였다. 세자빈의 경우, 인조대 소현세자빈의 가례시를 제외 하고, 현종 명성후의 嘉禮時 부터 장조 현경후 嘉禮時 까지 “자격라 겹너울”만 기록되어 있다.

3. 笠帽.

입모는 입모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출행 시에 포모 위에 헛별가림 목적으로 착용하였다. 입모는 4方帽形, 6角, 8角, 원형 등의 형제가 있었다. 왕비용은 8面 8頂帽가 아니었을가 추정하며, 母體를 덮는 衣次의 色은 仁祖 장렬후 부터 高宗 명성후까지 왕비의 것은 紫色으로 만들었다.

(가)帽體 : 80-100개 정도의 뒷살을 부채살 처럼 껴서 帽體를 만드는데, 帽體를 덮는 笠帽 製作用 衣次 겉감은, 紫色 초, 1尺 2-5촌(36-45cm), 안감은, 紫色 紬, 3尺(90cm)이 소요되었다.

(나) 입모끈 : 月尓只(끈)는 紫色 초, 長 2尺(60cm), 廣 5寸 5分(20cm)이 소용된다. 길이 60cm, 넓이 20cm크기의 끈을 너비를 반으로 접어서, 가장자리를 공그려서 끈을 만들고 머리를 위로 넘겨서 턱 아래서 맷다.

(다) 입모용 매듭장식 : 대홍색 真絲나 紵冒絲 1량 5錢을 사용하여 장식매듭을 만들고 뒷 중심에 부착하였다.

중기이후 17세기초의 <嘉禮都監儀軌>인 인조대 소현 세자빈의 嘉禮時 衣襪에 포함된 笠帽는 왕비용과 형제는 같되, 특히 장식이 화려하고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된다.

1) 소현 세자빈의 입모 :

*帽體를 덮는 帽의 겉감은 紫色 초, 1尺 2-5촌(36-45cm), 안감은, 紫色 紌, 3尺(90cm)이 소요되는데, 帽體 겉감에는 작은 眞珠 302개를 장식한다.

*紫色羅로 만든, 길이 1척 2촌(36cm), 너비 5촌 5분(15-16cm)크기의 笠帽에 달 아느린, 금박장식 도투락 냉기(끈장식)에는 中 크기의 眞珠 106알을 장식한다.

*笠帽의 頂上은 너비 2촌(6cm)크기의 方形 紫色 正緞으로 꽂모양으로 장식한다.

*笠帽의 周圍에는 백색, 자색, 유청색, 록색, 大紅의 5색 羅로 만든, 길이 1척(30cm), 너비, 1촌(3cm)되는 끈으로 둘러서 장식한다.

후기 19세기에 이르러 순조의 순명세자빈의 입모는 소현세자빈의 입모와 형제는 같으나 장식면에서 소현 세자빈에 비하여 단조롭고, 모체를 덮는 겉감의 색은 靑色이다.

2) 순조 순명 왕세자 빈의 입모.

*모체를 덮는 笠帽 製作用 衣次 겉감은, 靑色 초, 1尺 5촌(45cm), 안감은, 蘭색 紌, 3尺(90cm)이 소요되며,

*입모의 月尓只(끈)는 紫色 초, 長 2尺(60cm), 廣 5寸 5分(20cm)이 소용된다.

4. 너울드림(부착) 笠帽

너울을 드리운 笠帽는, 四面形, 圓形 혹은 方形, 6角形, 8角形으로, 뒷가지로 엎은 帽骨의 笠 주위에 얇은 紗, 紗, 羅, 麻직물의 너울을 둘러서 완성시킨다. ‘너울입(모)’은, “.紗垂四面掩面覆肩...”³⁵라 하여, 高麗時代의 ‘帽簷’³⁶의 遺習이며, 唐代 罂籬와 笠帽제도를 조합하여 성립을 본, ‘維帽’로, 唐車服誌에 보면, “維帽는 隋代에 시작 하였는데, 永徽中期에 帽주위에 裙을 부착하여 裙의 느러짐이 목 주변에 이르게 만들었다. 裙은 旱紗나 靑紗로 만들어 붙였다. 維帽의 가장자리를 빙둘러 느러지게 하거나 鮋笠의 앞면에 만 붙였다. 또 維帽와 같이 쓰는 ‘面衣’가 있었다. 面衣는 前後를 紫羅로 만들고 양 끝에 帶를 달아 얼굴을 가릴수 있도록 이

마에 둘러 땠는데, 維帽와는 다른 색으로 하였다. 遠行 乘馬時 착용하였다”고 되어있다. 騎馬園行 出行時 面衣와 維帽를 착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앞에 느린 면사포를 겉어 올린 예를 <도5-2>에서 볼 수가 있다.

宋代 ‘帽簷眼罩’³⁷⁾ <도2>, 일본의 市女笠 주위에 ‘가라무시’라고 하는 얇은 麻직물을 두른 것과 같은 제도이다. <도7-7>

조선의 경우, 太宗 12년 司憲府에서 올린 上疏文 내용 중에 “...露衣..笠帽는地位가 높은자의 옷으로...4품 이상의 正妾만 착용하게...”³⁸⁾라는 기록을 보면, “露衣”를 걸옷으로 입고, 머리에는 帽簷이 부착된 笠帽(후기의 명칭 : 너울립)를 쓰고, 行하는 것은, 高麗以來 부녀자들의 行服이었음³⁹⁾을 짐작케 한다. 또한 너울립은 형태상으로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너울笠 얼굴 위치 부분에, 너울 재료와 달리 별도의 투영가 용이한 천을 너울材料에 부착하여 만들거나⁴⁰⁾, (나) 너울笠 얼굴 위치 부분에, 前面만 홀으로 하여 투시가 용이하게 만든 경우, (다) 얼굴 위치 23-25센티 가량은, 帽簷(襍:너울)을 달지 않고, 외출시 얼굴부분에 별도로 이마에 둘러맨, 面紗를 드리우는데, 이 경우, 帽型의 추정형은 <도7-4>와 같다.

前者, (가.나)형 너울립의 경우, 앞을 겉어 올려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도 하였고, 얼굴이 드러난 부분을 부채로 일시 방편으로 가리우고 다니기도 하였다. 즉, “..笠帽를 겉어 올리지 말게 하소서...”⁴¹⁾ 하는 것을 보아서 알수가 있고, 後者 (다)형, 너울립은 쓰고 다니다가 面紗 부분을 겉어 올려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던 듯, “..양반 부녀자가 路上에서 面紗 겉어 올리는 것을 禁하게 하소서...”⁴²⁾의 기록을 보아서 이를 알수가 있다.

성종 5년 간행된 <國朝五禮儀>에서는 四禮儀式의 服制에서, 宋式 “蓋頭 : 방건형 머리덮개”를 本國의 “女笠帽”로 대신하는 時俗을 따르게 되므로⁴³⁾, 영조 20(1744)년에, 再 編纂한 <國朝續五禮儀>, 영조 27년에 간행된 <國朝五禮序例>에서도, 哀禮服에 착용해야 할 宋式, “蓋頭”가 당시의 時俗으로, 속칭 “女笠帽 ; 너울 부착 입모”로 <도3-1.2>와

같은 모양의 너울 입모로 대체된다.⁴⁴⁾

위에서 본것과 같이 宋의 儀禮書에 포함된, 宋式 “方形 大幅巾式 蓋頭”는 당시 조선 부녀자용 時俗의 ‘너울付着 女笠帽’ 제식으로 대체되고, 따라서 哀禮服用 쓰개도 國俗의 紗 細生布 12척으로 만든, ‘너울付着 女笠帽’로 대체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근거하에서, 常服禮裝用 ‘너울付着 女笠帽’가 服色이나 材料를 哀禮服制度와 달리하여 嘉禮衣櫛로 사용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조대 이후 국말까지의 <國婚定例>와 <尙房定例>, <嘉禮都監儀軌>에 보면, 納姑(嬪), 淑儀, 公 . 翁主의 嘉禮시 衣櫛속에 포함된 너울笠帽 치수 소요량에 “被面紗와 笠帽”兩者가 포함되는 것을 보아서, 帽型은 앞에서 본 4종류중에서(다)에 속하는⁴⁵⁾ 제도로 추정하며, “被面紗布”와 함께 착용하는 너울笠帽를 예복용 露衣와 함께 착용 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露衣 . 笠帽制”는 國初의 “地位가 높은자의 옷으로...4품 이상의 正妾만 착용하게”定한, 4품 이상 正妾의 출행시 예복이므로, 변함없이 중.후기 이후에도, 왕실 비빈용 가례용 衣櫛속에 포함된 것이다. <嘉禮都監儀軌>에 보이는 衣次와, 御수궁 궁중 유물전시관 소장, 전세실물 보고서⁴⁶⁾를 토대로 왕실 嘉禮 衣櫛用 “너울드림 笠帽”制의 制度를, 재구성하여 보면⁴⁷⁾, 다음과 같다.

(1) 笠帽 : ‘布帽’와 같이 쓰는 경우의 笠帽와 形制와 제작방법이 같다.

(2) 너울 : ‘布帽’만 단독으로 착용하는 경우의 ‘布帽’ 形制와 제작방법이 같다.

세자빈의 경우, 인조대 소현 세자빈의 가례시를 제외 하고는 현종 명성후의 가례시부터 장조 현경 후 가례시까지 “자적라 겹너울”과 “紫色 鴛鴦紋 織金 被面紗”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울”만 기록에 보이고 “입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입모는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으나, 너울을 제작하는데 소용되는 옷감의 치수가, 왕비의 衣櫛에 포함되는 “너울드림 입모”에 소요되는 옷감의 소요량과 같으므로, “자적라 겹너울”은 입모에 드리운 너울립의 너울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被面紗布 : “被面紗布”는 너울드림 입모와 같이 착용하는 것으로, 당시의 時俗으로 4품 이상

正妻에 해당하는 부녀자의 출행시의 예복용이었다. 袖面紗布는 너울 느림 재료가 羅인것과 달리, 투시가 용이한 紗직물로 만들었다. <嘉禮都監儀軌>에서 “面紗布”은 인조 장렬후(1638)가례시와 숙종 인현후(1687)가례시의 儀軌에는 “袖面紗布” 1벌만 보이는데, 안팍을 紫色 紗 10척(300cm)을 사용하여 겹으로 만들고, 면사포에는 泥金 3錢 3分으로 雲鳳花紋을 금박하여 착용한다. 착용시 길이 300cm가 되는 면사포를 중심이 頂首里에 위치하도록 하면, 양측으로 150cm가량이 느려져서, 160~165cm 가량 身長의 사람이 착용시, 장단지 깊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숙종 인원후(1702)부터 국말의 고종 명성후 까지의 衣襪에는 紫色紗 10척으로 겹으로 만들고, 너울드림 입모와 같이 착용하는 “袖紗布”가 있다. 그리고 숙종대 부터는 면사포에 紫色의 초로 만든 길이 2척(60cm), 너비 1-2(3-6cm) 촌이 되는 월마기(끈)을 달아서 흘러내리지 않게 이마에 동여매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자빈의 경우, 인조대 소현 세자빈의 衣襪에 포함된, “紫色 鶯鶯紋 織金 四面 袖面紗”를 제외 하고는, 현종 명성후부터 莊祖현경후의 嘉禮時까지 “자색 원양문 직금 袖面紗”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가 문조 신정후, 순조 순명후 가례시에는, 왕비의 가례시와 같이 자적라 9척으로 만드는 “흘 面紗布”와 안팎을 紫色초 10척을 사용하여 만들고 월마기를 달아서 만드는 “袖面紗布” 2種이 포함된다.

겹면사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옷감의 소요량은 왕비용 겹면사포의 소요량과 제작법이나 모양이 같다. 금박으로 왕비가 운봉화문, 세자빈이 원양문을 장식하는 차이가 있다. “袖面紗布”는 소현세자嘉禮時부터 1906년 純宗妃嘉禮時까지 다같이 “안팎으로 面紗 10尺”을 사용하여 만든다. 紫色 廣紗 10척(300cm)크기의 直四角形의 면사포를 쓰는데 흘러내리지 않게, 끈을 달아서 쓰는데, 끈은 자색 초로 만들고, 길이 2척(60cm), 너비 1촌(3cm) 크기였다. 끈을 다는 위치를 추정하면, 면사포를 길이 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서 중심의 양 끝에 紫色초로 만든 월마기(끈:2척:60cm*2촌:6cm)를 달아서 이마에 동여매고, 앞과 뒤로 느려서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조대 소현세자빈의 의대에 포함된 “겹

면사포 4面 一部”는 자적라에 금박을 한것 2장과 안감으로 자적초 10척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너울 드림 입모와 겹면사포는 착용시, 首沙只로 머리를 싸 맨다음, 禮服, 露衣를 입고, 먼저, 겹으로 만든 袖面紗布를 蔽面되도록 앞뒤로 쓰고, 그위에 너울 드림 입모의 너울자락을 부착하지 않은 부분이 얼굴위치 부분에 오도록 하여 셋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 1> 이화여대 소장, 面紗布 전세실물



<도 2> 宋代
'帽檐眼罩' 착용도



<도 4> 우리나라 壽禮服用 宋式
'蓋頭'착용도

1. 1432년제작, 삼강행실도 소재, 孝巾(蓋頭)착용도.
2. 家禮輶賢소재, 蓋頭 착용도.

<도 5> 우리나라 조선시대 笠帽만을 단독으로 착용한 예
1. 영조 정순후 가례도감의 궐 소재, 醫女의 황상립.
2. 경종 선자후 가례도감의 궐 소재, 騎行內人의 황상립.
3. 현종 명성후 가례도감의 궐 소재, 기행내인의 황상립.
4. 숙종 인원후 가례도감의 궐 소재, 기행내인의 황상립.



<도 3> 한·중, “布帽”만을 단독으로 착용한 사례
1.2. 昭陵服飾, 정인태 묘 출토 唐代俑, 95.
3.16c. 일본 屏風書 소재, 조선부인 蓋頭(布帽:너울) 착용도



<도 6> 우리나라 布帽와 笠帽

1. 고종 명성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황상립, 차비, 침선기, 기행시녀, 차비의녀,
2. 철종 철인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3.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5. 철종 철인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기행내인, 포모와 청상립,
6. 숙종 인현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7. 영조 정순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9. 혜원의 풍속화 소재, 포모와 입모.



<도 7> 중국의 布格帽림과 笠帽착용 사례

- 1.3. 소릉복식, 정인태 묘 출토 응, 95.
2. 唐 明皇幸蜀圖중 빛깔이 다른 포모와 笠帽착용도, 황능복, 진연연, 중화역대 복식 예술, 중국 여유출판사, 219.
4. 소릉복식, 정인태 묘 출토 당대용, 95.
5. 주봉, 중국역대 복장 참고자료, 북경연산 출판사,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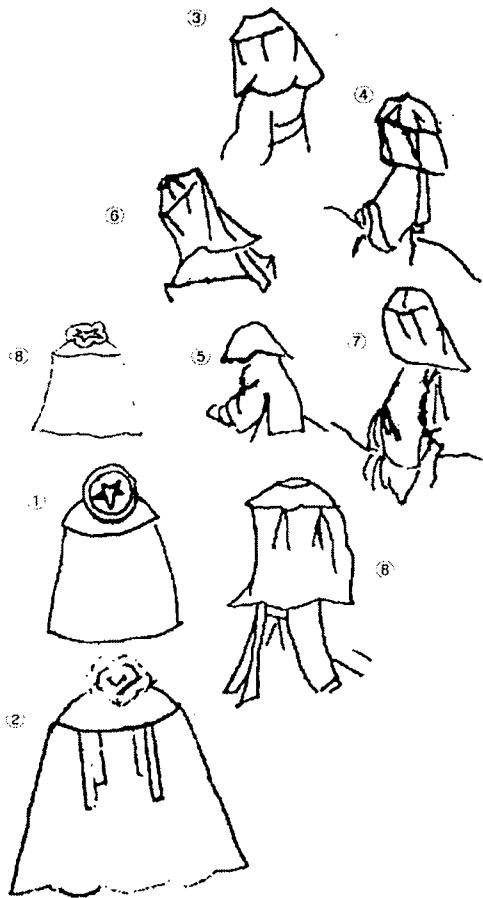


<도 8> 中.日國의 입무 주위에 너울을 드리우거나 덮어씌운 입모착용 사례

1. 胡茄 18拍圖 중 채문희
2. 황휘, 중국고대 인물복식의 화법, 상해 인민출판사, 15.
3. 손기, 중국 고대복식 與 論叢, 송대 清明上河圖 중, 입모의 뒷 중심에 장식댕기를 느림, 347.
4. 당대의 俑, 笠帽주위에 網으로 된 너울을 드리운 事例.
5. 손기, 중국 고대복식 與 論叢, 당대회화, 關山行旅圖中,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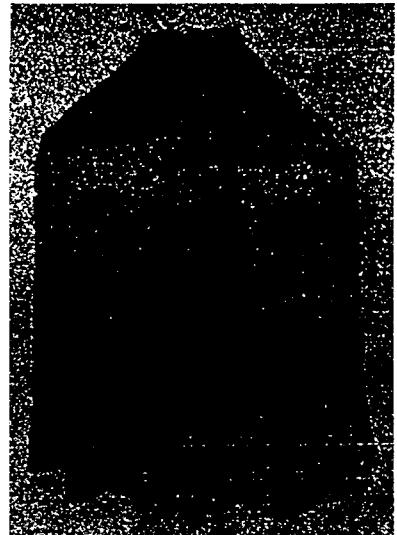
모에 덮어씌운 너울을 뒤로 제치고 얼굴을 드러나게 한 사례, 186.

6. 손기, 중국 고대복식 與 論叢, 송대 清明上河圖中, 얼굴측 너울을 뒤로 제치고 얼굴을 드러낸 事例, 186.
7. 일본의 市人笠 주위에 '가라무시' 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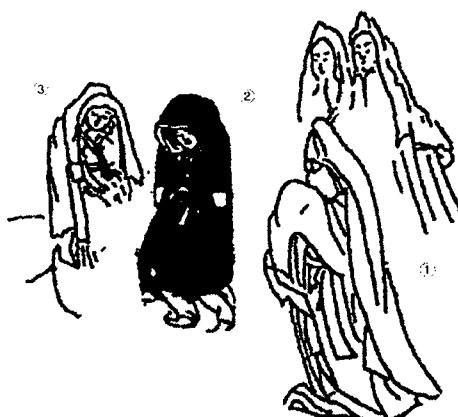


<도 9> 우리나라 너울드림 笠帽 착용도.

- 1.家禮翼賛 소재, 너울드림 입모.
- 2.국조오례의 서례(영조 27년) 소재 홍례, 국흘복제, 너울 드림 입모.
- 3.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 4.칠종 철인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 5.숙종 인현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 6.칠종 철인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상궁.
- 7.칠종 철인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기행시녀.
- 8.고종 명성후 가례도감의궤 소재.
- 9.국조상례보편소재, 개두: 너울드림입모.



<도 10> 우리나라 너울드림 입모
전세실물, 경기도 박물관 소장.



<도 11> 우리나라 夢頭衣, 夢首, 장옷 착용도.

- 1.인조 27년, 보석사 소장, 甘露佛堂畫 중, 夢首 착용도.
- 2.김홍도의 風俗畫 중 장옷을 외출시 쓰개로 사용한 예.
- 3.19세기 婚禮 풍속화중 '景衣' 대신 장옷을 머리에 쓴 사례.

VI. 결 론

1. 중국측 <儀禮 . 士婚禮>에서, “景”이나 景의 변형물인 “面紗布”를 벗는 시기는, (1)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여 祠堂에 告할때, 유모가 이를 벗겨 준다. (2) 新婦의 집에 도착하여 交拜禮 舉行時, 新郎이 손으로 걷어 준다. (3) 交拜禮後 保姆가 벗겨 준후에 合香禮를 거행하였다. 土庶婚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상은 新婦의 집에 도착하여 交拜禮 舉行時, 新郎이 손으로 걷어 주는 양식이다.

2. 중국측 황후의 경우, “景”은, 交拜禮시까지 착용하고 있다가 交拜禮後 合香禮前, 유모나 상궁이 황제를 대신하여 이를 제거하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왕비도 같았으리라 추정한다.

3. 중기 이후의 조선의 禮制에는 “景衣” 외에, “面紗布”的 制度가 있다. 禮制 新定時 중국의 전통적인 <儀禮 . 士婚禮>상의 쓰개인 ‘景衣’와, 宋代 변질된, ‘景衣’ 제도인 ‘面紗布’제도,兩者가 流入되면서, 왕실 비빈용으로 藍廣紗 12尺으로 만든, ‘景衣’제도와 “8척 紫的羅로 만든 훌 面紗布”제도兩者가 法服에 속하여 제도를 이룬다. ‘면사포’와 ‘경의’兩者를 모두 사용할 경우, ‘面紗布’는 親迎 당일, 왕비(빈)가 首飾을 한 머리 위에 덮어 쓰고, 親迎禮를 마치고 대궐로 향하는 轄을 왕비가 탈려고 할때 유모가, 面紗布를 쓴 위에 ‘景衣’를 덮어 씌워 주었으며, 벗는 시기는, 儀禮의 順次대로 라면, ‘景衣’나 ‘面紗布’는 交拜禮후 合香禮前, 유모나 상궁이 王을 대신하여 벗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面紗는 紫(왕비), 藍(왕세자빈), 祿(공 . 옹주) 으로 된 服色의 羅, 紗직물이 쓰였고, 신분에 따라서 雲鳳, 鸳鴦, 鶴, 吉相語紋 등을 金, 銀泥로 文飾하였다.

4. 先秦代 土庶婚의 “景”은, 宋代에 이르러, 그 명칭이 “蓋頭”, 혹은 일명, “帕”이 된다. 우리나라 중기이후의 土庶婚에서 “帕”的 服色은 紫. 紅. 藍, 綠 등의 色을 제외한, 土庶婚禮服인 “祔衣”的 服色과 동일하게 玄色의 紗, 羅직물로 만들어 덮어 썼다. 근세 중국에서는 土庶婚에 사용된, “景”的 변형물인 “帕(蓋頭)”은, 錦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橫으로 直四尺(120cm)크기였다. 착탈시기는 신부가 신

랑집으로 떠나기 前, 부모에게 인사 드린후 “帕”을 덮어썼다. 乘車후 夫의 집에 도착하여 交拜禮後, 保姆가 걷어 준후에 合香禮를 거행하였다. 우리나라로 동일 하였으리라 추정한다.

5. “蒙頭衣 : 蒙首衣 ; 蒙頭里”라 불렸던 内외용 쓰개류는, 복식겸용 “쓰개”로 변질되어, 그 名稱이 “머리를 덮는다”는 뜻의, “蒙頭衣 : 蒙首衣 ; 蒙頭里”라는 衣名을 지니고 있으며, 中國의 宋나라와 우리나라의 高麗시대, 日本의 幕府時代, 朝鮮에서 國末까지 착용되었다. 初期 “蒙頭衣 : 蒙頭里” 모양은 “對襟, 長袖, 양옆트임이 있으며, 치마길이로 길이가 긴, 長衫”형 이었다. 이 “蒙頭里”가 中. 後期사 이에 두루마기처럼 양옆이 막히면서 防寒用, 內外川 쓰개형의 “長衫 : 長衣”로 호칭되는 蔽面, 障蔽形 겉옷 겸용 쓰개류가 되는 것이다. 이로서 “高麗 아래 朝鮮 初期의 蒙頭衣=蒙頭里”=“宋式 背子=對襟, 長袖, 양옆트임, 치마길이 長衫”=“朝鮮初期 이후 부녀자용 두루마기형 防寒 및 內外 目的용 쓰개형 對襟 長衫(長衣 : 장옷)”=“傳世 實物 巫俗人 蒙頭里”는 동일 類型의 服具였다. 濟州道와 慶南지역 일부에서 舊韓末 以後, 婚禮時 “長衣(장옷)”을 치마 . 저고리 위에 입기도 하였고, 머리 丹粧이 끝나면, 面紗布 대신, 머리에 덮어쓰기도 하는 근거를 찾은 셈이다.

6. 出行時, 内외용 쓰개류인 “布帽”와 “笠帽”, “너울드리운 입모”와 “袂 面紗布”를 착용하는 제도는 (1) 布帽를 쓰고 그위에 입모를 덧쓰는 경우, (2) 입모의 주위에 너울드림을 달아 만든 입모 만 쓰는 경우, (3) 입모의 前面에는 너울드림을 달지 않고, 착용시 面紗布와 같이 쓰는 경우 등의 3개 유형이 있었다. 당시의 시속대로 妃嬪의 衣櫥에는 禮服인 露衣와 같이 착용하는, “포모”와 “입모”, “너울드리운 입모”와 “袂面紗布”的 제도가 포함되고, 겹너울을 만드는 재료는 인조대 이후 國末까지 王妃(嬪)의 衣櫥에서 衣次 소요량이 같다.

7. 笠帽은 단독으로, 혹은, 포모 위에 착용하였다. 입모의 형체는 4方帽形, 6方, 8方, 원형 등이 있었고, 왕비용은 8面 8頂帽로 추정하며, 母體를 덮는 衣次의 色은 王妃用은 紫色이다.

8. 너울드림(부착) 笠帽은, 땃가지로 엮은 帽骨

의 笠 주위에 얇은 紗, 紗, 羅, 麻직물의 너울을 둘러서 완성시킨다. 너울립은 3종류로 나눌수가 있다. (가)着用후, 얼굴 위치 부분에, 너울 재료와 달리 별도의 透視가 용이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다.

(나)着用후, 얼굴 위치 부분에, 前面만 훌으로 하여 안에서 투시가 용이하게 한다. (다)얼굴 위치부분은, 帽幘(裙:너울)을 달지 않고, 외출시 이 부분에 투시가 용이한 紗직물 面紗를 드리웠다. 착용시, 首沙只로 머리를 싸 맨다음, 露衣를 입고, 袱面紗 布를 蔽面되도록 앞뒤로 쓰고, 그위에 너울 드림입모를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 1)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 의궤복식, 수학사, 1991.
- 2) 홍나영, 女性 쓰개의 歷史, 學研文化史, 1995.
- 3) 주신, 고춘명, 中국의 관대사전, 상해출판사, 48,
- 4) 中國和平出版社, 中國風俗大辭典, 47-8
- 5) 馬之鑄, 中國的 婚俗, 經世書局印行, 앞책, 94-5.
- 6) 王增英, 이중상 저, 婚喪禮俗面面觀, 齊魯書社, 2001.1. 42. "...花轎內 ..不能擣去.新郎..."
- 7) 바로앞책, 43. 朱軾의 儀禮舒略, "...婿婦交拜後舉蒙頭.." "交拜, 必姆爲去之, 乃合蓋".
- 8) 바로앞책, 동면, 宋人 朱熹也主張 揭蓋頭的人應是 新郎, 婦拜, 墙答拜, 墙爲舉蒙頭.
- 9) 바로 앞책, 동면, 但最普遍的習慣, 是新郎妻子爲新婦 揭開蓋頭.
- 10) 清代 魏松이 쓴, <壹是紀始>, 권 5, 儀禮註疏 근거, '..隋書...后妃之禮..頭身加幘..至將拜...姆去幘...'
- 11)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2), 경춘사, 1997, 80.
- 12) 홍나영, 앞책, 1995, 169.
- 13) 바로앞책, 170-171.
- 14) 박경자, 禮服(1910-1945), 韓國의 服飾, 文化財 保護協會, 1982, 473.
- 15) 王增英, 이중상 저, 婚喪禮俗面面觀, 齊魯書社, 2001.1. 43. : 馬之鑄, 中國的 婚俗, 經世書局印行, 앞책, 93.
- 16) 肅宗代 李絳(1680-1746)의 <四禮便覽>은 주자의 <性理大全>中 家禮와 신의경의 <喪禮秘要>를 기본으로 하여 冠.婚.喪.祭의 四禮를 한곳에 모아 엮은 것으로, 그가 세상을 뜯지 100여년 뒤, 1884년에 그의 손자 李采가 바로잡아 定本을 만들었고, 이채의 두아들, 李光文과 李光正이 圖式을 덧붙여서 <新增 增補四禮便覽>이라 하여刊行한 것이 광무 4년(1900) 이었다.
- 17) "...姆奉女 (集說), 有拍蒙頭, 出中門.....登車, 下廉....".
- 増補 四禮便覽, 婚禮條, 37-39. :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조선시대 관혼상제(1), 1999. 159.
- 18) 太宗實錄.
- 19) 世宗實錄, 28년조. : 國朝五禮儀 凶禮條.
- 20)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朝鮮時代 冠婚喪制(1), 1999. 原文, 혼례조, 30. "...其制,對襟無袖開旁,長與裙齊旁及末堵有緣如蒙頭衣,無袖背子之類, 中國)婦人加於衣上..." 39.
- 21) “被”는 소매가 없으며, 蒙頭里나 背子와 같이 양옆이 열려있고, 길이는 치마와 같은 옷임도 알수가 있겠다.
- 22) 고복남, 韓國傳統服飾史 研究, 일조각, 1991, 358.
- 23) 바로앞책, 373-374.
- 24) 二重고름이란 겉감색과 안감색으로 각각 2개의 고름을 만들어다는 것을 말한다.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1975, 431.
- 25) 궁중유물의 경우, 무악인용으로 보고 있기도 하며, 황색명주로 만든 홀옷이며, 모양은 두루마기와 거의 같으나 겉갓과 안깃, 겉섶과 안섶이 똑같은 치수로 對襟으로 만들어져 있고, 옷깃과 어깨 주위에 잣이 물려져 있다. 잣의 색은 분홍, 자주, 미색, 황색, 주황색, 북청색 순서이다.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조선시대 궁중복식, 102-103.
- 26) 黃色 圓衫形, 對襟이며, 깃들래에 색천으로 작은 삼각형의 잣을 만들어서 물려 주었고 홍색의 廣帶를 繡 들찌처럼 들러서 여며 입었다.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 (2), 경춘사 1997, 300.
- 27) 黃色 紹紗로 만들었고, 對襟이며, 깃들래에 색천으로 작은 삼각형의 잣을 만들어서 물려 주었다.
- 28) 고복남, 앞책, 419-420.
- 29) 최재석, 제주도의 혼인 의의와 그 사회적 의미, 아세아 여성 연구, 16, 숙명여자 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1975, 197. : 홍나영, 경남지방의 혼례복에 관한 민속조사,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 18집, 88. : 고부자, 濟州道 通過儀禮服의 研究, 민속학논총 II, 1982, 206.
- 30)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 (1), 경춘사, 1996, 430. 433. 456-457.
- 31) 태종 8년 태상왕 승하시 : 세종실록, 28년 3월, 세종 28년, 禮曹詳定 王妃 壽制.
- 32) 세종실록, 28년 3월조.
- 33) 홍나영, 1995, 앞책, 156.
- 34) 유송옥, 1991, 앞책, 260.
- 35) "...紗垂四面掩面覆肩...", 李能和, 朝鮮 女俗考.
- 36) 帽幘 : 너울을 드리워 寒氣와 昆蟲의 침해 방지용 帽幘을 드리운 笠帽, 고려사 지권 39, 형법 2.
- 37) 笠帽에 첨이 부착되었고, 이 帽幘 이 눈을 가려주는 목적용 笠帽, 주신, 고춘명, 앞책, p114
- 38) 태종실록, 12년, 6월조.

- 39) 고려사 여복지.
- 40) 現傳 궁중 유물중에는 황색 생모시로 만든 너울의 前面, 가로 24*세로 32센티 가량을 향으로 만들어 透視가 용이하게 되어있다.
- 41) 태종실록, 12년, 11월조.
- 42) 성종실록, 2년, 5월조.
- 43) 국조오례의 흥례.
- 44) 홍나영, 1995, 앞책, 165. <嘉禮都監儀軌>소재 衣櫛用 너울드림 笠帽의 이해를 돋기위해서. 妻禮服用 女笠帽 : 너울 부착 입모의 제작법을 참고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紗 細生苧 12척(360센티)을 60센티 길이로 6폭을 만든다. (나)각폭을 다시 반으로 나누는데 길이 방향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사선으로 재단하여 12폭이 되게 한다. (다)12폭을 좁은 위쪽은 위쪽끼리, 넓은 아래쪽은 아랫쪽끼리 連接하여 12폭을 잇는다. (라)완성된 것을 대가지로 만든 모체에 덮어 씌운다. (마)안은 흰색 비단으로 만든다. (바) 3척(90cm)을 3등분하여 30센티 3조각을 꽂잎 모양으로 오려서 帽頂에 붙인다.
- 45) 앞쪽 얼굴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 23-25센티 가량은, 帽檐(裙)을 달지 않아서 얼굴을 가리우지 않도록 되어 있고, 외출시에는 이 부분에 별도로 머리에 덜어 쓴, 面紗가 드리워 쪘 가릴수 있도록 만든 形.
- 46)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조선시대 궁중복식, 19. : 김애리, 너울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73-79.
- 47) 추정하여 제작을 재구성 해보는 것이므로 오류를 배제할수 없다.
- 49) 馬之鑑, 中國的 婚俗, 經世書局印行, 앞책, 93.